소식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69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4 중 (2) 글루포시네이트, (4) 나프로파마이드, (9) 델타메트린, (21) 디클로르보스, (26) 디페노코나졸, (31) 마이클로뷰타닐, (35) 메토밀, (38) 메탈락실, (40) 메톨라클로르, (50) 베나락실, (61) 비펜트린, (63) 세톡시딤, (66) 사이퍼메트린, (68) 사이할로트린, (84) 에탈플루랄린, (101) 이미다클로프리드, (110) 카두사포스, (112) 카벤다짐, (114) 카보퓨란, (119) 퀴잘로포프에틸, (125) 클로로탈로닐, (133) 테부코나졸, (149) 트리플루미졸, (157) 퍼메트린, (163) 펜디메탈린, (164) 펜발러레이트, (170) 펜토에이트, (171) 펜프로파트린, (178) 폭심, (188) 프로파모카브, (190) 프로페노포스, (192) 프로피코나졸, (198) 피페로닐부톡사이드, (200) 헥사코나졸, (201) 헥시티아족스, (206) 클로르페나피르, (207) 테부페노자이드, (208) 테부펜피라드, (212) 플루페녹수론, (218) 디메토모르프, (220) 디에토펜카브, (221) 디티아논, (227) 아세타미프리드, (228) 아족시스트로빈, (230) 크레속심메틸, (233) 펜사이큐론, (234) 펜피록시메이트, (235) 포스티아제이트, (238) 플루디옥소닐, (242) 루페뉴론, (248) 아바멕틴, (249)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251) 에톡사졸, (275) 뷰타클로르, (290) 인독사카브, (309) 플루톨라닐, (321) 디노테퓨란, (323) 보스칼리드, (325) 사이아조파미드, (332) 클로티아니딘, (335) 트리플록시스트로빈, (337) 티아메톡삼, (338) 티아클로프리드, (345) 피라클로스트로빈, (349) 노발루론, (352) 메톡시페노자이드, (353) 메트코나졸, (355) 스피로디클로펜, (356) 에타복삼, (357) 디티오카바메이트, (361) 테플루트린, (373) 스피로메시펜, (380) 피리달릴, (386) 플로니카미드, (391) 만디프로파미드, (393) 메트알데하이드, (395) 플루오피콜라이드, (399) 사이플루메토펜, (403) 메타플루미존, (404) 메트라페논, (408) 스피네토람, (410) 옥솔린산, (415) 크로마페노자이드, (416) 클로란트라닐리프롤, (422) 펜티오피라드, (423) 피콕시스트로빈, (424) 피리플루퀴나존, (428) 플루오피람, (430) 설폭사플로르, (433) 사이안트라닐리프롤, (435) 펜피라자민, (436) 플루티아닐, (437) 플룩사피록사드, (441) 피리벤카브, (450) 발리페날레이트, (452) 아이소페타미드, (453) 만데스트로빈, (455) 옥사티아피프롤린, (459) 피플루뷰마이드, (467) 플룩사메타마이드, (468) 티아페나실, (501) 스트렙토마이신, (502) 발리다마이신에이, (508) 메펜트리플루코나졸, (509) 브로플라닐라이드, (511) 옥시테트라사이클린, (512) 플로메토퀸, (514) 아피도피로펜, (517) 빅사펜]

1) 「농약관리법」에 따른 등록(예정) 농약 및 수입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농약 잔류허

용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글루포시네이트 등 109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1-290호(2021. 6. 29. ~ 2021. 7. 19.)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 2021. 7. 26. ~ 7. 29.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비대상 제2021-3005호(2021.6.25.)

소식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71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냉동·냉장업의 안전관리인증(HACCP)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의 등록 유효기간 및 등록 취소 절차를 신설하는 한편, 적용 품목의 심벌 표시 및 평가 가점부여 등 우대조치를 강화하여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도입 확대 등을 통한 안전관리인증(HACCP)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냉동·냉장업의 안전관리인증(HACCP) 평가기준 신설(안 제5조제1항, 제6조제3항 및 별표 4)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냉동·냉장업소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따라 제품을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인증(HACCP) 평가기준 마련 요구

2) 식품냉동·냉장업에 대한 안전관리인증(HACCP)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해당 영업자가 안전관리인증(HACCP)을 득하고 그 기준에 따라 제품을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함

3) 식품냉동·냉장업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확대를 통한 제도 활성화에 기여

나.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의 적용업소의 등록 유효기간 및 취소 신청 절차 등 신설(안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1)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에 대한 등록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으나, 등록 유효기간 및 등록 취소 절차 부재 등 행정절차의 보완 필요

2)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의 등록 유효기간을 안전관리인증(HACCP)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정하고, 인증 반납 등 사유 발생 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함

3)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등록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모니터링 데이터 기록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등 안전관리인증(HACCP) 제도의 신뢰성 제고

다.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의 적용 품목 심벌 신설 및 평가 가점부여 등 우대조치 강화(안 제27조제4호, 별표 4, 별표 8)

1)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나, 제도 초기 단계로 업체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

2)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등록 업소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적용 제품에 대해 별도의 심벌 표시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3) 우대조치 강화를 통해 업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적용 제품의 심벌 표시를 통한 대국민 홍보 강화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 (2021. 7. 7.)

(2) 행정예고(2021. 7. 20. ~ 2021. 8. 10.)

소식 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73호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1. 개정 이유

배달 음식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음식점을 방문하지 않고 위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리시설 · 과정 등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 시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나트륨 · 당류 저감 메뉴 개발 · 판매 시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음식점 위생등급제와 연계하여 건강한 식문화 실천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생등급 평가항목에 CCTV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조리장의 내부를 실시간 공개 여부를 가점으로 반영

나. 위생등급 평가항목에 나트륨 · 당류 저감 메뉴 개발 · 판매 여부를 가점으로 반영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47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1-259호, 2021.7.20. (2021.7.20.~2021.8.11.)

(2)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 (제2021-3243호, 2021.7.13.)

소식 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74호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1. 제정이유

(1) 「식품위생법」제8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제2항 별표24 제3호에 따른 위생관리 사항의 점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2) 집단급식소 설치 · 운영자가 점검하고 기록해야 하는 식재료의 검수 및 조리 등에 대한 위생관리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급식 제공으로 먹거리 안전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목적, 위생관리 사항, 점검 및 기록 등 명시 (제1조~제5조)

– 식재료 검수부터 조리, 배식 등에 이르는 전과정에 대한 위생관리 사항을 정하고, 식재료 검수 및 위생관리 사항을 점검 · 기록하도록 명시

나. 기록의 보관(제6조)

– 위생관리 점검표 및 식재료 검수일지 기록 보관 기간 (3개월)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88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1-291호, 2021. 6. 30. ~ 7. 29.

2) 규제심사 : 비대상, 제2021-3002호, 2021. 6. 25.

소식 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75호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일부 개정고시

1. 개정 이유

–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적용업소가 동일 제조공정에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및 사후관리 시 중복 관리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평가항목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적용실시상황평가표 평가항목 및 판정기준 합리적 개선(안 별표 1 및 별표 1의2)

1) GMP 적용업소가 동일 제조공정에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식품위생법」제48조, 제48조의3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및 조사·평가 시 유사한 평가항목에 대하여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평가항목에 맞게 GMP 적용실시상황평가표에 반영하여 평가항목을 개선하고자 함

2)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개별인정형 제품 관리에 대한 평가항목을 추가하고, 평가항목 중 위탁제조 제품이 없는 경우 평가점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판정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나. 삭제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항을 인용한 조문 정비(현행 제27조 삭제)

– '20년 12월 1일부터 모든 제조업소에 GMP 적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GMP를 자율적으로 적용하던 업소 영업자 등의 교육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7조가 삭제('20.12.1 시행)되고, 모든 제조업소의 영업자 등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전문기관 지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교육실시기관 등) 규정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시행규칙 제27조를 인용하고 있는 현행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다. 어려운 용어 개선 등(안 제1조~제4조, 제7조, 제10조~제18조, 제20조~제26조, 제28조, 별표 1 및 별표 1의 2)

–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고,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확인(2021.6.21) : 비대상

(2) 행정예고(공고 제2021-255호, 2021.7.20.~8.9)

소식 6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79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코로나-19 장기화로 외식대체 가정간편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식육을 주원료로 한 식육간편조리세트 식품유형을 신설하고, 아플라톡신 기준·규격 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산양유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아플라톡신 M1 기준을 신설하며, 식용근거가 확인된 수산물 40종을 식품원료 목록에 추가하는 한편,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 동물용의약품 및 사료 등으로 인해 축산물에 비의도적으로 잔류되는 농약성분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산양유의 아플라톡신 M1 기준 신설[안 제2. 3. 5) (3) ②]

1) 곰팡이독소 기준규격 재평가 결과 오염도가 높아 관리가 필요한 식품의 기준 설정 필요
2) 산양유에 아플라톡신 M1 기준 신설
3) 아플라톡신 M1 안전관리 강화로 국민건강 보호

나. 식육간편조리세트 식품유형 신설[안 제5. 17 및 제5. 17. 17-7]

1)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식육가공업자도 '간편조리세트' 형태의 제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세부 기준·규격 마련 필요
2) 식육간편조리세트 제품에 대한 식품유형과 제조·가공기준 및 규격을 신설
3)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규격 마련으로 식품산업 활성화 및 식품안전관리 강화

다. 식품원료 목록 개정[안 별표 1 및 별표 2]

1) 식품원료 목록 중 품목명, 기타명칭, 학명, 사용부위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중복 등재, 식용근거 및 안전성이 확인된 원료에 대한 식품원료 목록 등재 필요
2) 동다리(Cerithidea rhizophorarum) 등 40품목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별표 1] 2. 동물성 원료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
3) 제한적 사용 미생물원료 Acetobacter aceti 등 13품목에 대한 사용조건 및 사용가능 부위 명확화
4) 식품원료 목록 중 품목명, 기타명칭, 학명, 사용가능부위 등 명확화
5)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의 품목 확대로 다양한 제품 개발 등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식품원료의 사용조건 및 목록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라. 국내 미등록 농약에 대한 잠정 잔류허용기준 삭제[안 별표 4 중 (5) 노르플루라존, (6) 니트라피린, (10) 도딘, (13) 디메티핀, (15) 디설포톤, (16) 디우론, (19) 디코폴, (22) 디클로플루아니드, (23) 디클로란, (25) 디클로포프메틸, (27) 디페닐아민, (28) 디펜아미드, (33) 말릭하이드라자이드, (34) 메빈포스, (37) 메카밤, (41) 메토브로뮤론, (43) 메톡시클로르, (47) 모노크로토포스,

(48) 바미도티온, (49) 바이오레스메트린, (52) 벤디오카브, (56) 브로마실, (57) 브로모프로필레이트, (62) 빈클로졸린, (70) 아닐라진, (75) 아진포스메틸, (77) 알디카브, (82) 에티오펜카브, (87) 에톡시퀸, (88) 에트림포스, (89) 에틸렌디브로마이드, (96) 옥사밀, (98) 오쏘-페닐페놀, (100) 이마잘릴, (102) 이산화황, (103) 아이소펜포스, (106) 이피엔, (107) 키노메티오네이트, (108) 티오메톤, (113) 카보페노티온, (117) 캡타폴, (120) 퀸토젠, (123) 클로펜테진, (124) 클로로벤질레이트, (128) 클로르설퓨론, (129) 클로르펜빈포스, (134) 터부트린, (136) 테크나젠, (138) 톨릴플루아니드, (144) 트리알레이트, (153) 파라티온, (154) 패러쾃, (159) 페나미포스, (160) 페노트린, (167) 펜설포티온, (172) 펜틴, (174) 포모치온, (175) 포사론, (177) 포스파미돈, (181) 플루발리네이트, (182) 플루시트리네이트, (184) 프로메트린, (191) 프로폭서, (193) 피라조포스, (195) 피리미카브, (197) 피리미포스에틸, (211) 프로티오포스, (213) 피라클로포스, (217) 디메틸빈포스, (240) 페녹시카브, (241) 뉴아리몰, (256) 플루오로이미드, (258) 피리다펜티온, (260) 할펜프록스, (262) 헥사플루뮤론, (263) 페노티오카브, (269) 메톨카브, (274) 벤족시메이트, (278) 사이클로프로트린, (280) 시노설퓨론, (282) 아닐로포스, (287) 이나벤파이드, (289) 이사조포스, (294) 터부틸라진, (295) 테닐클로르, (298) 티아조피르, (312) 피라족시펜, (313) 피로퀼론, (315) 피리미디펜, (316) 피리부티카브, (322) 디메피퍼레이트, (362) 트리아자메이트, (369) 프로피소클로르, (374) 알라니카브, (379) 플루아크리피림, (385) 펜클로림, (398) 퀴날포스, (414) 퀸메락, (418) 피페로포스]

1) 과학적인 근거 없이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국내 미등록 농약 또는 불필요한 잠정 잔류허용기준의 관리 필요
2) 노르플루라존 등 99종의 농약 잠정 잔류허용기준 삭제
3) 농산물 농약 PLS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합리적 관리

마.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4 중 (1) 이미녹타딘, (2) 글루포시네이트, (3) 글리포세이트, (12) 디디티, (18) 디캄바, (21) 디클로르보스, (26) 디페노코나졸, (29) 디플루벤주론, (31) 마이클로뷰타닐, (32) 말라티온, (35) 메토밀, (38) 메탈락실, (39) 메타미도포스, (40) 메톨라클로르, (46) 메틸브로마이드, (50) 베나락실, (58) 비에치시, (61) 비펜트린, (63) 세톡시딤, (66) 사이퍼메트린, (67) 사이플루트린, (68) 사이할로트린, (69) 사이헥사틴, (71) 아미트라즈, (73) 아세페이트, (76) 알드린 및 디엘드린, (83) 에티온, (85) 에토펜프록스, (86) 에토프로포스, (90) 엔도설판, (91) 엔드린, (100) 이마잘릴, (101) 이미다클로프리드, (105) 이프로디온, (110) 카두사포스, (111) 카바릴, (112) 카벤다짐, (116) 카탑, (126) 클로르단, (127) 클로르메쾃, (133) 테부코나졸, (135) 터부포스, (143) 트리아조포스, (149) 트리플루미졸, (154) 패러쾃, (157) 퍼메트린, (162) 페니트로티온, (163) 펜디메탈린, (170) 펜토에이

트, (171) 펜프로파트린, (178) 폭심, (179) 폴펫, (190) 프로페노포스, (192) 프로피코나졸, (194) 피레트린, (196) 피리미포스메틸, (200) 헥사코나졸, (201) 헥시티아족스, (202) 헵타클로르, (206) 클로르페나피르, (207) 테부페노자이드, (209) 테플루벤주론, (210) 페나자퀸, (212) 플루페녹수론, (218) 디메토모르프, (220) 디에토펜카브, (221) 디티아논, (225) 사이프로디닐, (227) 아세타미프리드, (228) 아족시스트로빈, (230) 크레속심메틸, (233) 펜사이큐론, (234) 펜피록시메이트, (235) 포스티아제이트, (236) 피리프록시펜, (237) 피메트로진, (239) 플루아지남, (248) 아바멕틴, (249)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251) 에톡사졸, (259) 피리메타닐, (283) 아시벤졸라-에스-메틸, (286) 에트리디아졸, (290) 인독사카브, (299) 티플루자마이드, (301) 펜헥사미드, (302) 포세틸-알루미늄, (309) 플루톨라닐, (317) 하이멕사졸, (323) 보스칼리드, (324) 비페나제이트, (325) 사이아조파미드, (326) 아세퀴노실, (332) 클로티아니딘, (333) 테부피림포스, (335) 트리플록시스트로빈, (337) 티아메톡삼, (338) 티아클로프리드, (345) 피라클로스트로빈, (349) 노발루론, (353) 메트코나졸, (356) 에타복삼, (357) 디티오카바메이트, (361) 테플루트린, (380) 피리달릴, (384) 사이플루페나미드, (386) 플로니카미드, (395) 플루오피콜라이드, (399) 사이플루메토펜, (403) 메타플루미존, (405) 사이에노피라펜, (408) 스피네토람, (409) 아미설브롬, (410) 옥솔린산, (415) 크로마페노자이드, (416) 클로란트라닐리프롤, (420) 린단, (422) 펜티오피라드, (423) 피콕시스트로빈, (424) 피리플루퀴나존, (426) 아메톡트라딘, (428) 플루오피람, (430) 설폭사플로르, (431) 아이소피라잠, (433) 사이안트라닐리프롤, (435) 펜피라자민, (436) 플루티아닐, (437) 플룩사피록사드, (441) 피리벤카브, (452) 아이소페타미드, (453) 만데스트로빈, (458) 사이클라닐리프롤, (459) 피플루뷰마이드, (460) 피카뷰트라족스, (467) 플룩사메타마이드, (469) 플루트리아폴, (471) 테트라닐리프롤, (495) 프로티오코나졸, (496) 프로피자마이드, (501) 스트렙토마이신, (518) 에티프롤]

1) 「농약관리법」에 따른 등록(예정) 농약 및 수입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국내외 사용되는 농약들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의 재평가 반영 필요
3) 이미녹타딘 등 141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4)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바.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별표 5 중 (1) 겐타마이신, (24) 암프롤리움, (30) 옥소린산, (42) 티암페니콜, (101) 클린다마이신]

1) 국내 허가사항 재검토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적용대상 개정
2) 2종 이상의 어종에 대해 허가된 겐타마이신 등 4종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어류 전체에 적용하도록 개정
3) 알에 대하여 항원충제인 암프롤리움 잔류허용기준

신설

4)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사. 축 · 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신설 등[안 별표 6 중 (129) 루페뉴론, (130) 메타플루미존, (131) 비페나제이트, (132) 사이안트라닐리프롤, (133) 아세타미프리드, (134) 에토펜프록스, (135) 테부페노자이드, 부칙 제3조]

1) CODEX 등 국제적으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국내 기준이 미설정된 축산물 중 농약성분에 대해 잔류허용기준 신설 필요

2)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료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수산물에 잔류 가능한 에톡시퀸 잔류허용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기준 적용 유예기간 필요

*「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2021-32호, '21.5.24, 시행일 : '21.6.24)

3) 루페뉴론 등 농약성분 7종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에톡시퀸 잔류허용기준 시행시기 유예

4) 축산물 중 농약성분의 잔류허용기준을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합리적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아. 일반시험법 개정[안 제8. 1. 1.2 1.2.1 라, 제8. 2. 2.2 2.2.2 2.2.2.8 가,제8. 2. 2.2 2.2.2 2.2.2.10 가. 5) 가), 제8. 2. 2.2 2.2.2 2.2.2.10 나, 제8. 3. 3.1, 제8. 3. 3.1 3.1.1, 제8. 3. 3.1 3.1.1 나. 3) 나), 제8. 3. 3.1 3.1.1 다. 3) 나), 제8. 3. 3.1 3.1.1 다. 5) 가) (1), 제8. 3. 3.1 3.1.1 다. 5) 나), 제8. 3. 3.1 3.1.1 다. 5) 다), 제8. 3. 3.1 3.1.2 가, 제8. 3. 3.1 3.1.2 나. 3), 제8. 3. 3.1 3.1.2 나. 4), 제8. 3. 3.1 3.1.2 나. 5) 가), 제8. 3. 3.1 3.1.2 나. 5) 나), 제8. 3. 3.1 3.1.2 나. 7), 제8. 3. 3.1 3.1.3 가. 1), 제8. 3. 3.1 3.1.3 가. 3) 라), 제8. 3. 3.1 3.1.3 가. 3) 마), 제8. 3. 3.1 3.1.3 가. 4) 나), 제8. 3. 3.1 3.1.3 가. 6), 제8. 3. 3.6 3.6.1 가. 5), 제8. 3. 3.6 3.6.1 가. 6), 제8. 3. 3.6 3.6.1 나, 제8. 7. 7.1 7.1.2 7.1.2.2, 제8. 7. 7.1 7.1.2 7.1.2.13, 제8. 7. 7.1 7.1.2 7.1.2.22, 제8. 7. 7.1 7.1.3 7.1.3.49-102, 제8. 7. 7.1 7.1.3 7.1.3.103, 제8. 7. 7.3. 7.3.1 7.3.1.3, 제8. 7. 7.3. 7.3.1 7.3.1.4, 제8. 7. 7.3. 7.3.1 7.3.1.5, 제8. 7. 7.3. 7.3.1 7.3.1.6, 제8. 7. 7.3. 7.3.1 7.3.1.7, 제8. 7. 7.3. 7.3.1 7.3.1.8, 제8. 7. 7.3. 7.3.1 7.3.1.9, 제8. 7. 7.3. 7.3.1 7.3.1.10, 제8. 7. 7.3. 7.3.2 7.3.2.4, 제8. 7. 7.3. 7.3.2 7.3.2.5, 제8. 7. 7.3. 7.3.2 7.3.2.6, 제8. 7. 7.3. 7.3.2 7.3.2.7, 제8. 7. 7.3. 7.3.2 7.3.2.8, 제8. 7. 7.3. 7.3.2 7.3.2.9, 제8. 7. 7.3. 7.3.2 7.3.2.10, 제8. 7. 7.3. 7.3.2 7.3.2.11, 제8. 7. 7.3. 7.3.2 7.3.2.12, 제8. 7. 7.3. 7.3.2 7.3.2.13, 제8. 7. 7.3. 7.3.2 7.3.2.14, 제8. 7. 7.3. 7.3.2 7.3.2.15, 제8. 7. 7.3. 7.3.2 7.3.2.16, 제8. 7. 7.3. 7.3.2 7.3.2.17, 제8. 7. 7.3. 7.3.2 7.3.2.18, 제8. 8. 8.3. 8.3.1, 8.3.4.2, 8.3.22.2, 8.3.23, 8.3.30, 8.3.54, 8.3.56, 8.3.59, 8.3.71, 제8. 9. 9.2 9.2.3, 제8. 9. 9.2 9.2.4, 제8. 11. 11.2]

1) 시험결과의 정확성 제고, 기준 · 규격 개정 및 유해인자로 관리되는 시험물질 사용감소를 위한 시험법 개선 필요

2) 이물시험법의 시험용액 중 규제물질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로 관리되는 사염화탄소 삭제

*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과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3) 판토텐산 함량 계산식의 명확화 및 다양한 식품 매질에 적용할 수 있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시험법 신설

4) 비타민 K1 시험법 일원화를 위해 제1법을 삭제

5) 보존료 시험법 중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시료 전처리, 기기분석 파장 등을 개정

6) 아질산이온 시험법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검량선 작성방법, 시료전처리 방법 등을 개정

7) 농약(사이클라닐리프롤) 잔류물의 정의 개정으로 기존 시험대상 대사산물(NK-1375) 삭제

8) 니코설퓨론 등 설포닐우레아계 36종 다성분 시험법 개정

9) 다성분 시험법 개정에 따라 시험결과의 정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복된 기존 단성분 시험법 삭제

10) 정량성 확보를 위한 사이할로프뷰틸 등 3종 다성분 시험법 신설

11) 농산물 중 에티프롤 농약 시험법 신설

12) 축산물 중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의 신설에 따른 관련 시험법을 신설하고, 기존 단성분들을 동시 분석할 수 있는 다성분 시험법으로 신설 및 개정

13) 아플라톡신M1 시험법이 산양유 등에 적용되도록 시험법 적용대상 명확화

14) 파툴린 시험법 중 시스템 적합성 시험과 시약 개선

15) 과학적인 시험법 개정으로 시험검사자에게 안전한 시험환경 제공하고 검사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자. 타 규정 개정사항 반영 등 자구 명확화[안 제2. 2. 18), 제2. 2. 19), 제2. 4. 2) (5), 제3. 2. 3) (4) ?, 제5. 10. 10-6 3) (1), 제5. 10. 10-7 3) (2), 제5. 11. 11-1 3) (7), 제5. 11. 11-2 3) (6), 제5. 11. 11-3 3) (10) ?, 제5. 11. 11-3 5) 주2, 제5. 16-4 3) (1), 제8. 12. 12.10]

1) 실온으로 보존 · 유통 가능한 식육가공품의 범위 명확화

2) 체중조절용조제식품과 시리얼의 영양소 기준과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의 규격 적용 방법 등의 자구를 명확히 하여 영업자의 혼란을 방지

3) 「국민영양관리법」제14조에 따른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개정사항 반영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21-133호(2021. 3. 30 ~ 2021. 5. 31)

나) 공고 제2021-134호(2021. 3. 30 ~ 2021. 5. 31)

다) 공고 제2021-288호(2021. 6. 30. ~ 2021. 8. 30.)
라) 공고 제2021-289호(2021. 6. 30 ~ 2021. 7. 19.)
마) 공고 제2021-395호(2021. 8. 9 ~ 2021. 8. 30)

2) 식품 및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유해오염물질분과 심의: 2021. 6. 25. ~ 6. 30.(서면)
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2021. 7. 26. ~ 7. 29.(서면), 2021. 9. 10. ~ 9. 15.(서면)
다)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생제도분과 심의: 2021. 9. 13. ~ 9. 15.(서면)
라)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2021. 9. 8. ~ 9. 14.(서면)
마)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기준 및 규격분과 심의 : 2021. 9. 13. ~ 9. 15.(서면)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1) 규제심사 대상 제2021-1329호(2021. 3. 23.)
(2) 규제심사 대상 제2021-3004호(2021. 6. 25.)
(3) 규제심사 비대상 제2021-1330호(2021.3.23.)
(4) 규제심사 비대상 제2021-3003호(2021. 6. 25.)
(5) 규제심사 비대상 제2021-3643호(2021. 8. 2.)
나) 식약처 자체규제심사(2021. 8. 9 ~ 8. 10, 원안의결)
다) 법제처 심사 : 법령위반 및 위임범위 일탈 없음(2021.9.10.)
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 비중요 규제(800회, 2021.9.17.)

소식 7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80호

「수입김치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

1. 제정이유

수입김치 해외제조업소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에 대해 수출국 정부와 협의한 기준, 인증절차 및 조사 · 평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범위, 기준 및 요건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한국으로 수출하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적용대상으로 하며, 이 고시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함

○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 받으려는 자는 선행요건관리기준 및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 · 운용하도록 함

나. 인증 · 변경 인증 · 유효기간 연장 절차(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지정한 중국 제3자인증기관이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증 · 변경 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다. 조사 · 평가(안 제12조)

○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해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 · 평가방법 및 조치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6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1-455호, 2021. 9. 27. ~ 29.

2) 규제심사 : 비대상, 제2021-3649호, 2021. 8. 2.

3) WTO 통지 : 2021. 9. 27. ~ 29.

소식 8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88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에게 카페인 함량 등을 표시 ·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설탕 무첨가” 등의 표시를 국제적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 비알코올 식품의 알코올 함유 표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자연상태 식품의 채취 · 생산 · 유통 현실을 고려하여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수의료용도등식품 등 일부 식품유형과 표시사항을 정비하고, 타 법령 · 고시 인용조문과 일부 모호한 규정 등을 개선 ·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총칙 및 공통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안 Ⅰ. 1, 2, 3, Ⅱ. 1. 가, 자, 카, 거, 2. 다)

1) 총칙 및 공통표시기준 중 식품유형, 법령 인용조항 등 정비
2) 비알코올 식품에 알코올 함유 표시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방법 개선 및 문구 정비
3) 급식 용도의 즉석섭취식품에 대한 표시방법 개선

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에서 조리 · 판매하는 식품에 고카페인 표시 · 안내기준 신설(안 Ⅱ. 5 신설)

1)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에서 조리 · 판매하는 식품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의 표시 · 안내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가 조리 · 판매하는 커피와 다류도 고카페인에 해당하는 경우 주의문구, 총카페인 함량과 고카페인 해당여부를 표시하거나 안내할 수 있도록 기준 신설
3)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를 통해 카페인 과잉 섭취로 인한 부작용 예방

다.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안 Ⅲ. 1. 가, 나, 다, 사, 자, 차, 카, 거, 더, 머, 서, 어, 저, 커, 4. 가)

1) 유산균을 첨가하여 제조한 과자, 캔디류, 빙과 등에 유산균수 표시방법 예시 신설
2) 코코아가공품류의 영양성분 및 내용량 표시 규정 정비
3) 고올레산 콩에서 추출한 콩기름에 대한 올레산 함량 표시 신설 및 식용유지류의 기타표시사항 일부 자구수정
4) 음료류의 일자표시 중 일부 자구수정
5)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수영양식품, 주류, 유가공품류, 즉석식품류의 식품유형 정비 및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의 표시사항 등 규정 신설

6) 포장육(국내산 쇠고기 1++등급)의 경우, 등급 표기 시 근내지방도를 포함하여 표시하도록 규정 명확화 및 자구수정

7) 벌꿀류의 표시사항 중 일부 자구수정

8) 달걀 껍데기 표시 의무자에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 추가 및 「축산법 시행령」에 따라 닭 사육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닭 사육시설 10m^2 미만 사육업자가 생산한 달걀의 생산자고유번호 표시 예외 규정 신설

라.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중 자연상태 식품 관련 규정 개정(안 Ⅲ. 1. 퍼)

1) 자연상태 식품의 표시에 포장일을 추가하여 생산연도 · 생산연월일 · 포장일 중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자연상태 식품은 생산연도 등을 냉동 · 건조 · 염장 · 가열처리 제품에 한하여 표시하도록 함

2)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진공포장 제외)한 자연상태 식품은 내용물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

3)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투명포장한 자연상태 식품의 경우 표시사항을 진열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때에는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

마.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안 별지 1 1. 나, 바)

1) 식품 제조 · 가공업자가 제조시설 등이 부족하여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 · 가공하는 경우, 위탁을 의뢰받은 영업소(위탁제조원)도 추가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2) 원재료명 세부표시기준 중 타 고시 인용문구 자구수정

바. "설탕 무첨가", "무가당" 표시기준 신설[안 별지 1 1. 아. 3) 다) 신설]

1)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에서 "설탕 무첨가"는 당류(단당류와 이당류의 합)를 사용하지 않고,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무당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2)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는 식품 제조 시 당류 첨가 여부에 따라 '설탕 무첨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국제적 조화 필요

3)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설탕 무첨가", "무가당"의 기준 신설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제5조의2 및 제6조제4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20-410호('20.9.18. ~ '20.10.19.)

나) 공고 제2021-224호('21.5.25. ~ '21.7.26.)
다) 공고 제2021-445호('21.9.10. ~ '21.10.11.)
2)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1) 공고 제2020-410호 (규제심사 대상, '20.8.11.)
(2) 공고 제2021-224호, 445호 (규제심사 비대상, '21.5.18.)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 규제심사(원안의결, '20.12.9.)
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비중요 규제('20.12.24.)

소식 9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89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설탕 무첨가"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정을 추진(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410호, 20.9.18)하고 있는 바, 이를「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의 "설탕 무첨가" 부당한 표시 · 광고 기준에 반영하는 한편,

"천연" 또는 "자연" 표현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 · 광고의 범위에서 영업소의 명칭,「상표법」에 등록된 상표명에 사용되는 표현은 제외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설탕 무첨가"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바, 동 고시에 개정되는 "설탕 무첨가" 등 기준에 적절하지 않은 표시 · 광고를 부당한 표시 · 광고로 반영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3. 바)

나. 부당한 표시 · 광고에 해당하는 "천연", "자연"의 표시 · 광고와 관련하여, 영업소의 명칭이나「상표법」에 등록된 상표명에 "천연", "자연" 표현을 사용한 표시 · 광고는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3. 차)

다. 부당한 표시 · 광고에 해당하는 "색소 무첨가"의 표시 · 광고를 예시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동 예시를 현행 규정에 맞게 명확히 정비하고,「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등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명칭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3. 가, 라, 바)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대상 확인('21.3.15.) : 비대상

(2) 행정예고(공고 제2021-212호, '21.5.17.)

소식 1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94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혼합제제류가 식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혼합제제류의 정의 개선 및 혼합제제에 희석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의 종류를 명확히하는 한편,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및 카라멜색소 중 일일섭취허용량이 설정되어 있는 품목을 분리하여 별도로 신설하고,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아황산염류 6품목을 포도당 등 당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과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등 5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혼합제제류와 식품과의 구분 명확화 등을 위한 혼합제제류 규정 개선

1) 혼합제제류에 대한 희석제의 사용 목적 명시 및 혼합제제에 희석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성분의 종류 명확화(II. 1. 2), II. 5. 나. 혼합제제)

2) 혼합제제류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혼합제제류 4품목의 정의 개정(II. 5. 나. L-글루탐산나트륨제제, 보존료제제, 타르색소제제, 합성팽창제)

3) 착향 및 발색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혼합제제류인 향료제제 및 발색제제 신설(안 II. 4. 나. 향료제제, 발색제제)

나. 일일섭취허용량이 설정되어 있는 식품첨가물 관리를 위한 성분규격 분리 · 신설

1)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중 글리세린디아세틸주석산지방산에스테르 등 3품목을 분리하여 별도의 성분규격 신설(II. 4. 가. 글리세린디아세틸주석산지방산에스테르, 폴리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폴리글리세린축합리시놀레인산에스테르)

2) 카라멜색소를 삭제하고, 제조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4개의 별도의 성분규격 신설(II. 4. 가. 카라멜색소, 카라멜색소I, 카라멜색소II, 카라멜색소II, 카라멜색소IV)

다.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16품목의 사용기준 개선

1)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6품목을 포도당 등 당류 제조공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품목별 사용기준 개정(II. 5. 가.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2)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에서 분리된 글리세린디아세틸주석산지방산에스테르 등 3품목의 사용기준 신설(II. 5. 가. 및 다. 글리세린디아세틸주석산지방산에스테르, 폴리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폴리글리세린축합리시놀레인산에스테르)

3) 카라멜색소의 분류체계 개편에 따라 카라멜색소의 사용기준을 삭제하고 카라멜색소I 등 4품목의 사용기준 신설(II. 5. 가. 카라멜색소, 카라멜색소I, 카라멜색소II, 카라멜색소II, 카라멜색소IV)

4) 합성향료와 천연향료를 향료로 통합함에 따라 합성

향료와 천연향료의 사용기준을 삭제하고 향료의 사용기준을 신설(Ⅱ. 5. 가. 합성향료, 천연향료, 향료)

라. 정확한 분석을 위한 시험조건 명확화 등 시험법 개선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등 5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개정(Ⅱ. 4. 가.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글루콘산아연, 메톡사이드나트륨, 아라비아검, 아셀렌산나트륨)

마. 식품첨가물 신규지정 신청시 제출자료 종류 명확화

식품첨가물 제조에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사용한 경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를 받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 명확화([별표 1])

3. 기타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1-377호, 2021.7.29. ('21.7.29.~'21.9.27.)

2)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확인('21.7.29.) : 비대상

3)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첨가물분과 심의('21.10.19.) : 원안의결

소식 1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95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에 따라 2020년에 인삼 등 7종의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과 기능성 재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인삼, 홍삼 등 7종 기능성 원료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변경하는 한편,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의 일일섭취량을 개정하고, 클로렐라의 중금속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비타민 K1 시험법을 단일화하고, 판토텐산 시험법을 개선하며, 카테킨 및 카페인 동시분석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인삼, 홍삼 등 7종의 기능성 원료 섭취 시 주의사항 등 개정(안 제 3. 2. 2-1 3), 제 3. 2. 2-2 3), 제 3. 2. 2-4 2) 및 3), 제 3. 2. 2-14 3), 제 3. 2. 2-26 3), 제 3. 2. 2-36 3), 제 3. 2. 2-55 3))

1) 2016년에 이미 인정된 기능성 원료에 대해 최신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과 기능성 재평가 제도 도입함.

2) 2020년에 수행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과 안전성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인삼, 홍삼, 클로렐라, 밀크씨슬 추출물, 마리골드꽃추출물,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엠에스엠(총 7종)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개정하고,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의 일일섭취량을 변경하며, 클로렐라의 중금속 규격을 강화함.

3) 소비자에게 최신 과학 수준으로 평가된 기능성원료의 안전정보와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도록 함.

나. 개별성분별 시험법 개정(안 제 4. 3. 3-5, 3-9, 3-79)

1) 시료채취량, 분석조건 개선 등 시험법 개정 필요

2) 비타민 K1 시험법 단일화, 판토텐산 시험법 개선, 카테킨 및 카페인 동시분석법을 신설하고자 함

3) 시험법 개정으로 효율적이고 정확한 분석 가능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1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21-252호 및 253호, 2021. 6. 10.(2021. 6. 10. ~ 2021. 8. 10.)

2)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가) 기능성 원료 인정 및 기준 · 규격 분과 심의 : 2021. 9. 13. ~ 9. 17.(서면)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대상 제2021-2280호(2021. 5. 21.)

나) 식약처 자체규제심사(2021. 10. 7. ~ 10. 11., 원안의결)

다) 법제처 심사 : 법령위반 및 위임범위 일탈 없음 (2021. 10. 12. ~ 10. 25.)

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 비중요 규제(제808회, 2021. 11. 12.)

소식 1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96호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현행「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의 일부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규 설정 또는 기준을 변경 · 삭제하여 생산단계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1)

1) 생산단계부터 관리가 필요한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유통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에 따른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변경 · 삭제 필요

2) 아족시스트로빈 등 14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보스칼리드 등 29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개정

3)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

나. 잔류농약 감소상수 적용기준 신설(안 별표 2)

1)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른 잔류농약 감소상수 신설 필요

2) 아족시스트로빈 등 14종 농약에 대한 감소상수 신설

3)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감소상수 신설로 생산단계 안전관리 가능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21-471호, 2021. 9. 30.(2021. 9. 30.~2021. 10. 19.)

2) 심의위원회

가) 2021. 8. 19.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전문가 검토회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비대상(국조실 접수번호 제2021-4556호, 2021. 9. 27.)

소식 1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21-97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국내 미등록 농약에 대한 잠정 잔류허용기준 삭제[안 별표 4 중 (11) 멥틸디노캅, (14) 디메토에이트, (20) 다이콧, (31) 마이클로뷰타닐, (32) 말라티온, (35) 메토밀, (38) 메탈락실, (39) 메타미도포스, (42) 메토프렌, (44) 메트리뷰진, (68) 사이할로트린, (83) 에티온, (93) 오메토에이트, (99) 이사-디, (116) 카탑, (118) 캡탄, (119) 퀴잘로포프에틸, (127) 클로르메콧, (130) 클로르프로팜, (137) 테트라디폰, (141) 트리아디메놀, (143) 트리아조포스, (147) 트리포린, (150) 티아벤다졸, (152) 티오벤카브, (155) 파라티온메틸, (157) 퍼메트린, (161) 페녹사프로프-에틸, (163) 펜디메탈린, (166) 펜뷰타틴옥사이드, (169) 펜코나졸, (176) 포스멧, (183) 플루아지포프-뷰틸, (185) 프로사이미돈, (188) 프로파모카브, (196) 피리미포스메틸, (198) 피페로닐부톡사이드, (199) 헥사지논, (219) 디아펜티우론, (247) 실라플루오펜, (302) 포세틸-알루미늄, (307) 프탈리드, (332) 클로티아니딘, (343) 플루록시피르, (388) 시안화 수소]

1) 과학적인 근거 없이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국내 미등록 농약 또는 불필요한 잠정 잔류허용기준의 관리 필요

2) 멥틸디노캅 등 45종의 농약 잠정 잔류허용기준 삭제

3) 농산물 농약 PLS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합리적 관리

나.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별표 4 중 (1) 이미녹타딘, (32) 말라티온, (61) 비펜트린, (66) 사이퍼메트린, (67) 사이플루트린, (99) 이사-디, (101) 이미다클로프리드, (105) 이프로디온, (112) 카벤다짐, (116) 카탑, (154) 패러콧, (162) 페니트로티온, (163) 펜디메탈린, (171) 펜프로파트린, (178) 폭심, (189) 프로파자이트, (207) 테부페노자이드, (210) 페나자퀸, (220) 디에토펜카브, (236) 피리프록시펜, (251) 에톡사졸, (255) 파목사돈, (290) 인독사카브, (335) 트리플록시스트로빈, (337) 티아메톡삼, (338) 티아클로프리드, (342) 플루미옥사진, (345) 피라클로스트로빈, (386) 플로니카미드, (405) 사이에노피라펜, (408) 스피네토람, (409) 아미설브롬, (435) 펜피라자민]

1) 국내외 사용되는 농약들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의 재평가 반영 필요

2) 이미녹타딘 등 33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21-394호(2021. 8. 9 ~ 2021. 8. 30)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 2021. 9. 10. ~ 9. 15.(서면)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대상 제2021-3642호(2021. 8. 2.)

나) 식약처 자체규제심사(2021. 10. 7 ~ 10. 11, 원안의결)

다) 법제처 심사 : 법령위반 및 위임범위 일탈 없음 (2021. 10. 12 ~ 10. 25)

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 비중요 규제(808회, 2021.11.12.)

소식 1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98호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유형에 식육간편조리세트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축산물을 수입위생평가 대상으로 포함하는 한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새롭게 수입이 허용된 국가 및 축산물을 반영하고 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육가공품의 유형에 식육간편조리세트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축산물을 수입위생평가 대상으로 포함하고자 함(안 제2조)

나. 멸균 식육가공품의 멸균처리 조건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멸균온도와 시간으로 현행화 하고자 함(안 별표 제1호가목)

다. 라트비아 · 슬로바키아산 유가공품을 수입허용국가 및 축산물에 포함함(안 별표 제2호나목)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1-443호(2021.9.10. ~ 9.30.)

(2)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대상 확인(제2021-2067호, 2021.5.6.)

정리: 방우석(영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